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2.19  
교육사회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2월 10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2월 18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6002호, 99.8.31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672호, 99.12.31 개정)이 개정되어 회의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16691호, 2000.1.8) 됨에 따라 교육위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함 (안 제1조 및 제3조)
-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함 (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2)
  - 의정활동비 : 월 600,000원 → 월 900,000원
  - 회기수당 : 일 60,000원 → 일 80,000원
  - 국외여비 :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규조문대비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 하되,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중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하고,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을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2]중 일비(1일당)란과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1중 “일비·숙박비·식비”를 “숙박비·식비”로 한다.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제2항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회의수당</u>”이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을 말한다.</li> <li>3. (생략)</li> </ol>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회기수당</u>” .....</li> <li>    <u>회기수당</u>.....</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2년분에 상당한 금액</li> <li>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li> <li>3. (생략)</li> </ol> <p>②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회기수당</u>.....     ....</li> <li>2. ....     .....<u>회기수당</u>.....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